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시 보

제2173호

2023년 1월 27일 (금)

차 례

입법예고

○ 파주시 공고 제2023-272호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1

고 시

○ 파주시 고시 제2023-39호 도로명주소 고시 ····· 3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공고 제2023 - 272호

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7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파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4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3년 2월 16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도로건설과 생활도로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도로건설과(우 10932)

- 전화 : 031-940-4666 / 팩스 031-940-4649 / 이메일 hs010754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 고려, 임의 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,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.

파주시 고시 제2023-3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, 제26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합병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7.

파주시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양지말길 103-1 등 1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(☎940-489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▶ 도로명주소는 2023. 1. 2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▶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▶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